

## 4.3.25 교과목이수면제규정

제정 2015. 08. 18.  
개정 2016. 02. 26.  
개정 2018. 10. 31.  
개정 2019. 12. 03.  
개정 2021. 03. 25.  
개정 2022. 06. 09.  
개정 2023. 06. 0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과목 이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양필수 교과목 중 글로벌역량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6.02.26., 2023.06.08.>

제3조(신청자격) 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이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. 단, 교과목 이수 면제는 2학년 2학기 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.

1. 삭제 <2023.06.08.>
2. 삭제 <2023.06.08.>
3. 공인 토익 750점 이상인 경우 기본영어1 또는 기본영어2 중 택 1 <개정 2016.02.26., 2021.03.25., 2023.06.08.>
4. 공인 토익 850점 이상인 경우 기본영어1 또는 기본영어2, 글로벌영어1 또는 글로벌영어2 중 각 택1 <개정 2016.02.26., 2021.03.25., 2023.06.08.>
5. 공인 토익 950점 이상인 경우 기본영어1 또는 기본영어2, 글로벌영어1 또는 글로벌영어2, 글로벌영어3 또는 글로벌영어4 중 각 택1 <신설 2023.06.08.>

② 전 항 각 호의 공인 토익 점수는 ETS(Educational Testing Service)에서 발급한 성적 기준이며, 수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.

제4조(신청절차 및 승인) ① 이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HUMAN PLUS 교양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2.26., 2018.10.31., 2019.12.03., 2022.06.09.>

1. 이수 면제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.
2. 공인시험 성적 사본 1부 및 대조용 원본 1부.
3. 해당학기 등록 영수증 사본 1부.

② HUMAN PLUS 교양학부장은 이수면제 신청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, 관련자료와 함께 승인여부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16.02.26., 2018.10.31., 2019.12.03., 2022.06.09.>

제5조(학점 인정) ① 이수 면제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표상에 P로 표기하며, 학업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한다.

② 인정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년별 최대 취득가능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 시작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실용영어I~IV로 글로벌영어1~4를 각각 대체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교과목이수면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신청절차 및 승인)제1항 중 “교양학부”를 “HUMAN PLUS 교양학부”로 한다.

제4조(신청절차 및 승인)제2항, 서식1 부분 중 “교양학부장”을 각각 “HUMAN PLUS 교양학부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전 취득한 토익성적에 대한 면제 과목은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다.

